



문서번호	주거정비과-3646
결재일자	2016.3.25.
공개여부	부분공개(7)
방침번호	

주무관	재개발2팀장	주거정비과장	도시관리국장	
김지연	이경도	소순면	03/25 윤호중	
<b>협</b>	주거사업팀장	온일근		
<b>조</b>	주거환경개선팀장	고정명		
	재개발1팀장	조영두		

# 2016 해빙기 재개발·재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

2016. 3.



**성 동 구**

# 2016 해빙기 재개발·재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

2016년 해빙기에 발생하는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민간소유시설(재개발·재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)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

## □ 추진배경

### ○ 근거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27조(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)
-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분야 추진지침(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-62, 2016. 1. 3.)

### ○ 추진방향

- 민간소유시설(주택, 재난위험시설)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 중점점검 실시
- 재개발·재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현장담당자 현장별 자체점검 실시
- 2016년 해빙기 안전관리는 국가안전대진단 한분야로 포함시켜 추진
-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시행 행정지도

## □ 점검개요

### ○ 점검기간

- 점검기간: 2016. 2. 29.(월) ~ 3. 16.(수)
- 정비기간: 2016. 3. 17.(목) ~ 3. 23.(수)

### ○ 점검대상

- 재개발·재건축 구역내 노후시설물 20개소(중점관리시설 17개소, 재난위험시설 3개소)
- 재개발·재건축 공사장 10개소(재개발공사장 7개소, 재건축공사장 3개소)
- 추가 점검 요청(동주민센터 요청 및 민원) 위험시설물 5개소

○ 점 검 반: 담당공무원, 외부 전문가 및 공사현장 근무자 합동점검반 구성

시설명	계	공 무 원		외부전문가	비고
		점검반장	반원		
재난위험 시설물	3명	1명 (시설물담당팀장)	1명 (시설물담당자)	1명 (재난안전전문가)	
건축공사장	2~3명	1명 (시설물담당팀장)	1명 (시설물담당자)	서울시점검시 현장별 별도 점검 진행	

○ 점검방법

- 시설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시설물의 상태 평가(점검결과에 따라 관리등급 조정)
- 건축물의 종전상태(균열, 기울기, 침하)와 현재 상태 비교점검 실시
- 손상, 결함 부위의 진행 상태 점검 실시
- 주 구조부재 기능유지 점검 실시
- 축대 및 사면 부등침하 및 균열 점검 실시

□ 점검결과

○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

- 적출 현장: 4개소

시 설 명	점 검 결 과	조 치 결 과
민락맨션담장	- 담장균열 및 일부구간 전도 위험으로 담장 보수 필요	- 소유주에게 지적사항 및 안전 조치토록 통보
성수우주연립 담장	- 육안확인결과 전도가 진행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담장의 표면 상태는 양호함	- 4월중 담장 정비 예정
성수연립 담장	- 측면 담장 균열에 따른 전도 위험으로 담장 보수 필요	- 소유주에게 지적사항 및 안전 조치토록 통보
응봉동 265-145 노후 옹벽	- 암반의 노후화에 따른 박리와 박탈이 발생했고 상부에서의 우수 유입 차단이 필요	- 소유주에게 지적사항 및 안전 조치토록 통보

- 그 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

- 점검결과를 담당자별 성동구재난관리시스템(LDMS) 및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조치완료

○ 재개발·재건축공사장 점검결과

- 적출 현장: 4개소
- 적출 내용: 붙임4의 점검표 참조
- 조치 결과: 2016. 3. 23.한 4개소 현장 모두 조치 완료
- 점검결과를 담당자별 성동구재난관리시스템(LDMS) 및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조치완료

□ 행정사항

-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·보강 등 위험요소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담당자별 성동구재난관리시스템(NDMS) 및 국가안전대진단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및 관리
- 재난위험시설물 지적사항은 소유주에게 지적사항 및 안전 조치토록 통보
- 정비사업공사장 및 주거정비과의 응급복구,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완료

붙임: 1. 2016 해빙기 안전점검대상 1부.

2. 추가 점검 요청 위험시설물 1부.

3. 재난위험시설물 점검결과 각1부.

4.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공사장 점검결과 각1부. 끝.